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기경기



여수시 조례 제2208호

붙임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정 대리인의 운영

제22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선정 대리인

제4장의2에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2조의3(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선정 결과를 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2조의4(선정 대리인의 운영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 또는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u>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u></p> <p><u>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선정 결과를 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u></p> <p><u>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u></p> <p><u>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u></p> <p><u>제22조의4(선정 대리인의 운영 등)</u></p> <p><u>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u></p>

현행	개정안
	<p><u>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u></p> <p><u>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u></p> <p><u>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u></p> <p><u>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u></p> <p><u>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 또는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p>